

심사보고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8
----------	-----

2022. 3. 16.(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충청북도지사)

가. 제안사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북문화재단 추가 출연금 지원

○ 출연개요

(단위 : 천원)

출연기관	출연액			출연 필요성
	계(A=B+C)	기정(B)	금회추경(C)	
충북 문화재단	1,733,448	1,583,353	150,095	사무처장 연봉상승분 및 문화 복지팀 신설('23.1.)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2명) 추가 반영 등 필요

※ 관계법령(출연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 사무처장 신규 채용('22.11.)에 따른 연봉상승분 및 문화복지팀 신설('23.1.)에 따른 재단 신규직원 인건비(2명) 추가 반영
-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및 교육비 부족분 지원 필요
- 2023 추가경정예산 충북문화재단 운영비(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당초 예산	증△감	비 고
총 계		1,733,448	1,583,353	150,095	
인건비	인건비	1,207,668	1,091,937	115,731	사무처장 인건비 직원 2명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17,790	117,790	-	변동없음
	공공운영비	28,900	28,900	-	변동없음
	여비	45,000	45,000	-	변동없음
	업무추진비	28,800	28,800	-	변동없음
	직무수행경비	2,400	2,400	-	변동없음
	연구개발비	8,300	2,000	6,300	홈페이지 영문버전구축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리뉴얼
	복리후생비	148,664	130,600	18,064	정규직(2), 기간제(13) 복지포인트 정규직 특근매식비
교육훈련비	15,800	5,800	10,000	기본교육시간 증가(30시간→50시간)에 따른 교육비 증액	

구 분		1회 추경	당초 예산	증△감	비 고
	수선유지교체비	30,856	30,856	-	변동없음
	행사홍보비	8,000	8,000	-	변동없음
	관서업무비	7,120	7,120	-	변동없음
	평가급	84,150	84,150	-	변동없음

□ 지도 감독 부서 의견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 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충북문화재단은 충청북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으나, 사무처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충북문화재단 내 문화복지팀 조직신설에 따른 신규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분 및 교육비 부족분 지원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영비 추가 출연을 요청함.
- 추가 출연 요청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처장 신규채용 및 조직신설에 따른 직원 2명 신규채용 인건비로 115,731천원 증액, 신규채용 2명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반영과 도 파견 공무원 특근매식비 반영으로 복리후생비 18,064천원 증액됨.

- 문화재단 직원들의 기본교육시간이 기존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증가(2021년 문화재단 내규 개정)에 따른 교육비 증액이 반영되어 10,000천원 증액됨.
- 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영문버전 구축과 메인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비 6,300천원 증액됨.
- 추가 출연 요청 산출내역에서 신규채용 사무처장 및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 부분은 2023년도 당초 출연계획안에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요청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그러나, 그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경비, 도과견 공무원 특근매식비, 교육훈련경비, 홈페이지 관련 연구개발비는 당초 출연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경비(2019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 재단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해왔음), 교육훈련경비(2021년 문화재단 내규 개정으로 50시간 교육을 진행해왔음)는 2022년도까지 각각, 재단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하였기에 금번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타당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앞에서 추가적인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18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개요

(단위 : 천원)

출연기관	출연액			출연 필요성
	계 (A=B+C)	기정 (B)	금회추경 (C)	
충북문화재단	1,733,448	1,583,353	150,095	- 사무처장 연봉상승분 및 문화복지팀 신설('23.1.)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2명) 추가 반영 필요

※ 관계법령(출연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3. 주요내용

충북문화재단 추가 출연금 지원 : 150,095천원

- 사무처장 신규 채용('22.11.)에 따른 연봉 상승분 및 문화복지팀 신설('23.1.)에 따른 재단 신규직원 인건비(2명) 추가 반영
-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및 교육비 부족분 지원 필요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은영	김낙영	나영진	3842

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김갑수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 기관규모: 1사무처 6팀 ○ 주된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등을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출자출연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출연금 지원액 : 150,095천원 ○ 출연금 내용 					
	(단위: 천원)					
	구분	2022 (최종)	2023년			비고
			계(A+B)	기정(A)	금회추경(B)	
계	1,488,702	1,733,448	1,583,353	150,095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1,488,702	1,733,448	1,583,353	150,095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문화복지팀 신설('23.1.)에 따른 재단 신규직원 인건비(2명) 반영 ○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분 및 교육비 부족분 지원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지도감독부서인견(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 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발취 					

1 출연기관 현황

(재)충북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 례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3-222-5316 홈페이지 : www.cbfc.or.kr		
주요연혁	· '11. 11. 30. 법인 설립, 제1대 대표이사 취임(강형기) · '13. 11. 30. 제2대 대표이사 연임(강형기) · '16. 1. 4. 제3대 대표이사 취임(김경식) · '18. 1. 4. 제3대 대표이사 유임(김경식) · '19. 1. 4. 제4대 대표이사 취임(김승환) · '21. 1. 4. 제4대 대표이사 유임(김승환) · '23. 1. 4. 제5대 대표이사 취임(김갑수)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33명		일 반 직(대표이사 포함) 26명		단기 기간제(계약직) 7명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대표이사 (비상임)	김갑수	서원대학교 용복합대학 석좌교수		2023. 01. 04. ~ 2025. 01. 03.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		2023. 01. 04. ~ 2025. 01. 03.		
	"	이동원	충북민예총 이사장		2023. 01. 04. ~ 2025. 01. 03.		
	"	김장응	前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회장		2023. 01. 04. ~ 2025. 01. 03.		
	"	강영애	충청대학교 실용댄스과 교수		2023. 01. 04. ~ 2025. 01. 03.		
	"	고미현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2023. 01. 04. ~ 2025. 01. 03.		
	"	신현주	충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2023. 01. 04. ~ 2025. 01. 03.		
	"	이은희	(주)대원 전무이사		2023. 01. 04. ~ 2025. 01. 03.		
	"	육경애	ESIN 전무이사		2023. 01. 04. ~ 2025. 01. 03.		
	"	강대식	법률사무소 진 사무국장		2023. 01. 04. ~ 2025. 01. 03.		
	비상임이사 (당연직)	맹은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 01. 04. ~ 2025. 01. 03.		
	"(윤번제)	반주현	괴산부군수		2023. 01. 04. ~ 2025. 01. 03.		
	"(윤번제)	김진석	영동부군수		2023. 01. 04. ~ 2025. 01. 03.		
감사(선임직)	이훈영	태성회계법인 회계사		2023. 01. 04. ~ 2025. 01. 03.			
감사(당연직)	김은영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2023. 01. 04. ~ 2025. 01. 03.			
주요기능	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3.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						
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백만원)	연도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자 산	36,441
	예산액	18,651	18,097	19,769		부 채	7,672
	지자체 지원액	1,355	1,342	1,488	'22.12.31.기준	자 본	28,769
경영성과 (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입		총지출		당기순이익		
	16,303		16,186		117		

2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출연	1,733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지원
- 충북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경쟁력 확보

□ 출자 · 출연개요

- 사업위치 : (재)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 일원)
- 설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민법」 제32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재 산 : 296.6억원(기본재산 278억원, 보통재산 18.6억원)
- 주요기능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 교육·연구 등

□ 산출기초

- '23년 제1회추경 출연요구액 : 150백만원
- 인건비 116백만원, 물건비 34백만원(세부내역 '붙임1'참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9,171	348	464	601	699	744	861	1,269	1,355	1,342	1,488

□ 기대효과

- 충북문화재단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③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1】 2023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충북문화재단 운영비(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1회추경	당초예산	증△감	비고
	총 계	1,733,448	1,583,353	150,095	
	소 계	1,207,668	1,091,937	115,731	
	계	1,097,018	1,011,727	85,191	
인 건 비	01 보수				
	○ 기본연봉				
	- 가급 5,746천원×1명×12개월	= 68,949	58,392	10,557	사무차장 기본급 상승분
	- 다급 3,495천원×4명×12개월	= 167,760	167,760	-	
	- 라급 3,030천원×6명×12개월	= 218,160	218,160	-	
	- 마급 2,473천원×10명×12개월	= 296,760	296,760	-	
	- 다급 3,495천원×1명×9개월	= 31,455	-	31,455	인건비 2 (다급, 라급)
	- 라급 3,030천원×1명×9개월	= 27,270	-	27,270	
	○ 급식비				
	- 140천원×21명×12개월	= 35,280	35,280	-	
	- 140천원×2명×9개월	= 2,520	-	2,520	
	○ 직급보조비				
	- 가급 400천원×1명×12개월	= 4,800	4,800	-	
	- 다급 175천원×4명×12개월	= 8,400	8,400	-	
	- 라급 165천원×6명×12개월	= 11,880	11,880	-	
	- 마,바급 155천원×10명×12개월	= 18,600	18,600	-	
	- 다급 175천원×1명×9개월	= 1,575	-	1,575	
	- 라급 165천원×1명×9개월	= 1,485	-	1,485	
	○ 상여금				
	- 500천원×21명×3회	= 31,500	31,500	-	
	- 500천원×2명×2회	= 2,000	-	2,000	
	○ 시간외근무수당				
	- 22,023원×21명×20시간×12개월	= 110,995	110,995	-	
	- 23,415원×2명×20시간×9개월	= 8,429	-	8,429	
	○ 공무원 파견수당				
- 400천원×1명×12개월	= 4,800	4,800	-		
○ 대표이사 활동보조비					
- 2,500천원×1명×12개월	= 30,000	30,000	-		
○ 가족수당					
- 80천원×15명×12개월	= 14,400	14,400	-		
	계	110,650	80,210	30,440	
퇴직 급여	○ 퇴직연금 부담금	= 110,650	80,210	30,440	

구분	산출내역	1회추경	당초예산	증△감	비고	
	소계	525,780	491,416	34,364		
	계	117,790	117,790	-	-	
물건비	01 사무관리비					
	○ 각종소모품비					
	○ 범용 S/W구입비 =	10,000	10,000	-		
	○ 신문구독료 =	4,000	4,000	-		
	○ 각종 인쇄비 =	1,770	1,770	-		
	○ 홍보운영비 등 =	5,200	5,200	-		
	○ 차량 임차료 =	5,000	5,000	-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	10,440	10,440	-		
	○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임차료 =	4,000	4,000	-		
	○ 전산장비 임차료 =	500	500	-		
	○ CCTV 임차료 =	2,000	2,000	-		
	○ 회계감사 및 중간감사 수수료 =	11,000	11,000	-		
	○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사용료 =	1,680	1,680	-		
	○ 국가문화예술포럼지원시스템 사용료 =	20,400	20,400	-		
	○ 노무·세무 업무대행 수수료 =	2,300	2,300	-		
	○ 각종 수수료 =	4,500	4,500	-		
	○ 이사회 등 참석수당 =	10,000	10,000	-		
	○ 각종 위원회 등 심의·회의수당					
		계	28,900	28,900	-	
		02 공공운영비				
		○ 우편물 발송대 =	1,200	1,200	-	
		○ 전화, 인터넷 등 통신료 =	8,400	8,400	-	
		○ 각종 제세 공과금 =	500	500	-	
	○ 수도, 전기 등 연료대 =	7,500	7,500	-		
	○ 차량 유류대 및 차량관리 =	5,800	5,800	-		
	○ 고속도로 통행료 =	500	500	-		
	○ 직원 단체보험 부담금 =	5,000	5,000	-		
	계	45,000	45,000	-		
여비	○ 국내여비 =	35,000	35,000	-		
	○ 국외업무여비 =	10,000	10,000	-		
	계	28,800	28,800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2,000천원×12월 =	24,000	24,000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400천원×12월 =	4,800	4,800	-		
	계	2,400	2,400	-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경비 - 50천원×4명×12개월 =	2,400	2,400	-		

구분	산출내역	1회추경	당초예산	증△감	비고
	계	8,300	2,000	6,300	
연구개발비	○ 홈페이지 영문버전 구축 - 2,000천원×1식 =	2,000	2,000	-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리뉴얼 - 6,300천원×1식 =	6,300	-	6,300	
	계	148,664	130,600	18,064	
복지후생비	01 사회보험부담금 ○ 4대 보험 등 각종 기관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106,000	96,000	10,000	
	09 기타복리후생비 ○ 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 1,000천원×27명×1회 = - 400천원×13명×1회 = ○ 특근매식비 - 8천원×25명×4회×12개월 = - 8천원×3명×4회×9개월 =	27,000 5,200 9,600 864	25,000 - 9,600 -	2,000 5,200 - 864	정규직(2),기간제(13) 복지포인트 정규직 특근매식비
	계	15,800	5,800	10,000	
교육훈련비	○ 각종 교육훈련 경비 - 역량강화교육 400천원×29명 = - 워크숍 4,200천원×1식 =	11,600 4,200	5,800 -	5,800 4,200	기본교육시간 증가(30시간→50시간)에 따른 교육비 증액
	수선 유지 교체 비	계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30,856 14,856 3,000 13,000	30,856 14,856 3,000 13,000	- - - -
행사홍보비	계	8,000	8,000	-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	8,000	8,000	-	
관서업무비	계	7,120	7,120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천원×29명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400천원×12월 =	2,320 4,800	2,320 4,800	- -	
평가급	계	84,150	84,150	-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2,805천원×25명×120% =	84,150	84,150	-	

● 인력현황('23. 3.기준) ※-파견공무원(6급) 일반직 다급으로 구분

구분	총계	정원									정원외 단기기간제
		소계	대표이사	일반직						단기기간제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정원/현원	33	29/26	1/1	28/25	1/1	0/0	6/6	7/6	10/3	4/9	7